

# 감사보고서

강원도지사 및 원주의료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원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1. 시간외수당

원주의료원 보수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의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조례,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정관, 연봉제규정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3항에서 “제 수당”이라 함은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장에는 제수당을 상여수당, 정근수당, 경영실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에 의하면,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연봉 적용대상은 원장, 의사, 약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주의료원은 의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 등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주의료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일과후 수술1건당 5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013년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사에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5월
시간외수당	12,400,000	12,850,000	5,850,000	3,600,000

원주의료원은 보수규정 및 연봉제 시행규정에 따라 수당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연가의 사용촉진

연차휴가는 원주의료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사용촉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가는 사용했으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병가 5일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성명	총사용병가일수	연차미사용일수	미사용연차수당
***	60	22	3,482,600
***	60	0	-
***	42	25	4,407,500
***	35	3	430,230
***	31	6	895,560
***	28	25	4,829,250
***	21	7	1,264,550
***	17	10.5	1,846,110
***	15	2	192,120
***	15	15	3,125,250
***	14	0	-
***	13	5	408,800
***	11	0	-
***	11	0	-
***	10	6	1,204,500
***	10	13	1,111,890
***	8	0	-
***	8	2	305,300
***	8	7	625,170
***	7	16	3,013,920
***	7	0	-
***	7	1	119,980
***	7	1.5	259,540
***	6	5	471,850
***	6	12	1,713,960
***	5	14.5	2,913,340
***	5	1.5	255,480
***	5	6.5	1,071,390
***	5	6	768,480
***	5	0	-
***	5	10	2,027,500
합계			36,744,270

<2019년>

성명	총사용병가일수	연차미사용일수	미사용연차수당
***	60	7.5	1,387,200
***	60	0	-
***	56	0	-
***	44	12	2,721,600
***	42	0	-
***	42	6	1,329,120
***	40	4.5	460,440
***	40	0	-
***	35	13.5	2,871,040
***	30	3	528,450
***	28	0	-
***	27	4	488,400
***	24	1	110,990
***	18	0	-
***	14	7	1,201,060
***	10	1	167,100
***	8	9	1,408,140
***	8	20.5	3,978,020
***	7	0.0	-
***	7	0	-
***	6	0	-
***	5	8.5	1,779,640
***	5	0	-
***	5	0	-
***	5	0	-
***	5	2	182,820
합계			18,614,020

특히, 다음과 같이 병가를 사용하고 그 해에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성명	병가총사용일	연차 미사용일	연차 미사용 수당
***	42	25	4,407,500
***	28	25	4,829,250

원주의료원은 연차사용 및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5일

감사 정재훈

